

# 학교생활인권규정

## 학교생활인권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청심국제중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학생생활에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본교의 ACG 교육 이념에 입각한 인성교육과 창의적, 국제적 사고를 생활 속에서 함양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① 생활인권규정 제정의 기본목적은 학교 내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한다.
- ② 이를 위반 시 관련 학생의 선도과 교육, 학교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권리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12. 21. 권고)

**제3조 「적용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기재 사항, 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고등학교 표준안 제32조(학교생활규정),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경기도 교육청 교육규칙 고등학교 표준안 제34조(휴게·휴육 방법),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3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12조(사생활의 자유), 개정 초·중등교육법 19조 및 동법 시행령 31조, 35조(징계), 36조(퇴학처분), 제31조의 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관련에 의거하여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제 2 장 학교생활

**제4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교실의 개방 및 폐쇄」**

아래 시간에 방재실에서 교실 개방과 폐쇄를 담당한다.

	지하 특별활동실	2,3층 열람실	3층 교실	5층 교실
개방	수,목 13:00	15:00	06:00	
폐쇄	수 18:00	22:00	22:00	22:00
	목 18:00			

※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제6조 「기상」**

학생들은 아침 6시 30분에 기상한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생활관 규정 및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7조 『아침 점호』**

- ① 아침 점호는 어떠한 경우라도 참석해야 한다. 무단불참자는 생활관 지도교사들이 즉각 확인하여 만일에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적극 대비한다.
- ② 점호 시에는 교복 착용과 교과서 준비 등 등교의 모든 준비를 마친다.
- ③ 점호 후에는 모든 학생이 아침 식사를 하도록 한다.

**제8조 『등교 및 조회』**

- ① 모든 학생은 단정한 교복차림과 마음가짐으로 등교하여 하루의 일과를 준비하도록 한다.
- ② 담임교사는 8시 50분에 조회를 실시하여 미등교자의 경우 생활관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등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09시 00분 이후 등교자의 경우 담임교사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제9조 『수업』**

- ① 수업시간 및 기타 자율학습 시간을 엄수한다.
- ② 조는 것, 수업과 관련 없는 교재를 보는 것, 장난하는 것 등을 금한다.
- ③ 무단으로 결석, 지각, 결과한 경우 사고로 인한 결석, 지각, 결과로 처리하며 학생생활인권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④ 질병으로 인한 조퇴나 결과를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 또는 교과담임교사의 확인증을 지참하여 보건실에서 휴식할 수 있다.

**제10조 『열람실 및 세미나실 이용』**

- ① 열람실은 방과 후에 감독교사의 지도하에 이용할 수 있으며, 항상 정숙한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 ②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세미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율학습 감독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세미나실을 지정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적 이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해당 교과 교사의 허락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다.)
- ③ 세미나실 이용 시에는 지나친 소음을 삼가며, 이용 후에는 청결을 유지한다.
- ④ 야간 자율학습시간에 임의로 열람실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무단이탈(생활관 입소, 허가받지 않은 교실 이용 등)시 상황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 ⑤ 자율학습 감독 교사는 실내 정숙과 청결 유지를 위하여 힘쓰며, 면학 분위기 저해자의 경우 상담 또는 훈계나 체력단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도한다.

**제11조 『귀가 및 귀교』**

- ① 중고학생의 귀가 일정은 부장협의회 결정에 따른다.
- ② 귀교는 일요일 저녁 22:00까지 이며, 특별한 사유로 지체가 될 경우 생활관 지도교사에게 사전에 알린다.

**제12조 『두발』**

- ① 두발은 단정하고 깨끗하게 유지한다.
- ② 남학생은 단정하게 머리를 손질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 ③ 무분별한 파마, 염색, 탈색, 코팅, 셋팅을 자제한다.

**제13조 『복장』** 교복에는 동복과 하복이 있으며, 방과 후의 복장으로 생활복이 있다.

- ① 교복규정  
가. 착용 시기 : 교내에서는 항상 교복 혹은 생활복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교 일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복 착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나. 유의사항  
-교복의 임의적 변형을 금지한다.  
-교복을 깨끗이 세탁하여 입는다.  
-방과 후 복장은 교복 또는 생활복으로 한다.  
-여학생의 경우 치마와 바지 중에서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

**제14조 『이성교제』**

- ①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며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② 지속적이고 빈번한 만남을 금한다.

**제15조 『의사표현』**

-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⑤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 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16조 『부정행위』**

- ① 정기고사나 기타 평가 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성적관리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결정사항을 참고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를 결정한다.
- ② 정기고사 및 기타 평가 시 부정행위의 유형  
가. 다른 학생의 답을 옮겨 적은 경우  
나. 미리 준비한 노트나 쪽지를 보는 행위  
다. 고사 시간 휴대폰, MP3, 여학기, 녹음기, 전자사전류, PSP, PDA 등 일체의 전자기기류 소지  
라. 기타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동  
마. 명백한 부정행위 시도 행위

**제17조 『흡연 및 음주』**

흡연 및 음주는 철저히 금지하며 위반 시 선도규정에 의거 처벌한다.

**제18조 『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

- ① 수업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한다.
- ② 휴대전화를 사용함에 있어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화사용 예절을 지킨다.

**제19조 『개인용 컴퓨터(노트북 컴퓨터) 사용 및 관리』**

- ① 수업 및 각종 시험 등의 필요에 따라 일과 중 노트북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 ② 수업 중에 노트북을 사용해야 할 경우 담당교사의 허락을 얻고 사용하며 학습목적 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③ 개인용 컴퓨터는 학습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④ 컴퓨터 관리는 개인이 철저히 하도록 노력한다.
- ⑤ 학생의 학습목적 이외의 노트북 사용이 적발될 시 담당교사의 지도에 따른다.
- ⑥ 주말 및 공휴일 노트북 사용은 감독 교사 및 생활관 교사의 감독 하에 일정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 『식당 예절』**

- ① 자율배식으로 음식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적당히 그릇에 담는다.
- ② 음식물을 흘리거나 쏟을 경우 자신이 다음 이용자를 위해 최대한 빨리 치우며,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영양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③ 잔반은 남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분리수거에 적극 동참한다.
- ④ 중, 고 식사시간을 철저히 지킨다.

**제21조 『도난사고 예방』**

- ① 일과시간에는 절대 생활관에 남아 있을 수 없다.
- ② 금품 및 귀중품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담임교사 등에게 보고한다.

**제22조 『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 ①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23조 『학교 정보 접근』**

- ① 학교생활인권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학교 게시판에 공지하여 둔다.
- ② 학교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 제·개정된 경우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후 개정사항을 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 3 장 학생 선도 규정**

**제24조 『목적』**

본 규정은 본교 학칙과 교육법의 준칙에 의거 학생의 징계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사기 진작과 교풍을 수렴하며 학생을 바르게 선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5조 『방침』**

- ① 학생선도는 징계보다는 사전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② 징계는 평소 개인의 품행을 참작하고 교육적 측면을 중시하여 징계보다는 선도 위주로 처리하도록 한다.

- ③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처벌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모든 생활지도는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6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① 구성 및 의결
  - 가.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 나.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교안전교육부장으로 한다. 위원은 해당 학년 부장을 포함하여 부장교사 2명, 해당 학년 생활지도 대표교사 1명과 생활관 부장으로 한다. 간사를 별도로 두어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다.
  - 다.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기능과 임무
  - 가. 본 위원회는 학생 징계 사항이 있을 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하고 이를 심의한다.
  - 나. 위원장은 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학교안전교육부에서 본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 다.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 학생 징계의 해제에 관한 사항
    -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 ③ 위원회의 운영
  - 가.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이 주관하고, 그 실무는 학교안전교육부장이 담당한다.
  - 나.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통지를 개최 1주일 전에 해당 학생(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를 통보 받은 후,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는 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학교안전교육부에 제출 할 수 있다.
  - 라. 생활교육위원회 개최시, 피해 학생(들)과 가해 학생(들)의 대기 장소는 분리한다.
- ④ 징계의 확정
  - 징계의 종류 및 기간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며 선도 처분결과는 공고해서는 안 된다.
- ⑤ 재심의 요청
  -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 『징계』**

- ① 학교장은 면학 기풍의 조성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생활 부적응 학생의 징계에 관한 일을 심의한다.
- ② 징계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효력은 학교장 결재 후 발효된다. 단 본 회의에 담임을 출석시켜 의견을 최대한 참작하되 담임의 의결권은 없다.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는 본 위원

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는 각 사안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가. 교내 봉사

나. 사회 봉사

다. 특별교육이수

라. 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마. 퇴학(고등학교만 해당)

사. 위 항목에 규정되지 않은 징계(생활관 퇴소, 전문 상담 교사의 상담 등)

※ 교내봉사 처분의 경우 학생의 학습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⑤ 징계를 받은 학생은 징계 기간 중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징계 받은 사항에 대한 이행 후 소감문을 써서 학교안전교육부에 제출한다.

⑥ 교내 봉사 2일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생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학생회장단 회의의 결과에 따르며, 교내 봉사 3일 이상 또는 위 ④항 다 항목에서 마 항목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향후 6개월간 각종 추천서 및 장학금 등의 수여자격에 있어서 반성의 의미로 제한을 둘 수 있으나, 최종결정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⑦ 징계 확정 후에 선행 공로가 발생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징계기간의 단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 내용을 담임과 학생에게 고지하고, 보호자에게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선도에 협조하도록 한다.

⑨ 징계 확정 후 징계의 처리는 14일 이내에 시행한다. 단 방학기간이 징계 처리기간과 중복될 경우 개학 직후 처리한다.

⑩ 징계 봉사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할 수 있다. 단 고사 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한다.

⑪ 징계 만료전이라도 개선의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결정 할 수 있다.

⑫ 징계의 해제는 개선의 의지가 뚜렷할 경우 학교안전교육부장이 담임교사와 협조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결정 후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다.

⑬ 해당 학생 및 보호자는 징계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조치를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교안전교육부에 신청할 수 있다.

⑭ 징계 확정 후 징계를 거부할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결정 후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퇴학(고등학교만 해당)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⑮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고등학교에 해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는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나. 피청구인

다.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고등학교에 해당)

라.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⑯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는 사안은 다음과 같다.

가. 무단으로 행한 지각, 결과, 조퇴, 결석, 외출, 외박

나. 남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는 경우

다. 학교 기물 파괴 및 훼손

라. 흡연 및 음주 (담배, 라이터, 술 소지)

마. 정기고사 및 각종 평가 시 부정행위

바. 교사에 대한 불손한 행위 및 교사의 지시 불이행

사. 과도한 애정 행각

아. 불량 서클 조직 및 활동

자. 학교를 비방하는 언행

차. 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명백히 징계행위라고 판단한 경우

⑰ 행정심판

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나. 퇴학처분(고등학교에 해당)에 대한 재심청구에 대한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⑱ 행정소송

가.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제28조 『교내봉사』

① 교내 봉사는 학교안전교육부장 또는 담임교사의 지도를 받아 일과 시간 이후에 시행한다.

② 학교내 봉사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로 명할 수 있으며 징계의 기간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 제29조 『사회봉사』

① 사회봉사의 경우 병원, 장애자 수용시설,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 시설에서의 봉사활동을 하게 하여 깊은 반성과 회개의 기회를 갖게 하며, 아래 항목에 따라 선도한다.

가. 사회봉사 기관은 보호자가 임의로 선정할 수 없으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봉사활동의 종류, 내용, 방법, 기간, 봉사활동 기관 선정 등을 심의하여 대상 학생의 보호자와 협의, 선도 차원에서 실시한다.

나. 봉사활동 후 지도대장에 일시, 장소, 내용, 기간 등을 기록하여 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다. 사회봉사활동 사항을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학생은 봉사활동 기간의 단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봉사활동을 마친 학생에게 소감문을 작성하거나 지속적인 상담 등 사후 지도를 철저히 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도록 한다.

마. 불성실한 실시에 대하여 재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② 사회봉사는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로 명할 수 있으며 징계의 기간은 학생

활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선도를 하려는 학생의 평소의 생활태도와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 일수는 가감이 가능하며 이러한 결정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 ④ 이성교제에 관한 특별 조항  
가. 본교의 이념상 이성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엄격히 지도한다.  
나. 과도한 이성 간의 교제나 신체 접촉이 빈번한 경우에는 1차 지적 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수위를 결정한다.  
다. 나.항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학생이 재차 지적될 경우 가중처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수위를 결정한다.

### 제30조 「특별교육이수」

- ① 특별교육은 아래의 기관에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 기관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콜 중독 치료 학교  
다.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 교육 기관, 심리 치료 교육 전문 기관, 또는 의료 기관  
라.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 ② 특별교육은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로 명할 수 있으며 징계의 기간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31조 「생활관 퇴소」

- ① 생활관 퇴소라 함은 하루 일정을 모두 마치고 학교를 벗어나서 보호자의 관리 하에 생활함을 말하며, 보호자가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재회부되어 가중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 ② 보호자에 의한 관리 시간은 저녁식사 시간 이후부터 익일 등교 시간까지이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전일에 해당한다.
- ③ 생활관 퇴소 시 보호자의 관리에서 벗어나 교외에서 발생한 일체의 문제 상황은 해당 학생 보호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④ 퇴소 기간 중이라도 학교의 정상적인 일과 운영에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 ⑤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생활관 퇴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가. 보호자의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나. 학교생활에 부적응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다. 생활 태도가 불량하여 타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라. 동료 학생들과의 관계 소원으로 일시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⑥ 생활관 퇴소 기간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에서 결정한다.

### 제32조 「출석정지」 및 「퇴학」

- ①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가정학습을 명할 수 있으며 가정학습을 명할 때에는 보호자의 '가정학습계획서'를 받아 그 이수결과를 학교안전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선도처리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우단결석' 일수에 산입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② 퇴학 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제31조 『징계 기준과 방

법』에 따라 명할 수 있다.

- ③ 퇴학 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한다.

### 제33조 「징계 기준과 방법」

- ① 징계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판단하되 학생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적용하여야 한다.
- ② 징계의 기준과 방법 적용에 있어서 위원을 상호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학생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판단하여 결정한다.

## 제 4 장 학생회 운영규정

**제34조 「목적」** 학생회는 학년별 학생 활동 추진 및 협의를 위한 자치적인 협의기구로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5조 「명칭」** 본회는 청심국제중고등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제36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제37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 「기능」** 본회는 제3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회칙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① 학년을 총괄하며 대표로서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돕는 활동
- ② 학생 연구 활동 및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③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 ④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 ⑤ 학교의 건전한 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
- ⑥ 학생 복지향상을 위한 활동과 각종 봉사활동
- ⑦ 학교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종합 발의 및 토의
- ⑧ 학교의 정책 결정 및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 활동
- ⑨ 기타 학칙과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

**제39조 「효력정지」** 이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40조 「임원」** 본회의 구성은 각 학회회장 및 부회장, 그리고 각 학급의 회장으로 구성된 4개의 부서를 두며, 학급회와 학생회의 중간단계의 협의체로서 주로 활동한다.

**제41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 ② 학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각부 임원 『학급회장, 부회장』은 학생회장의 의견을 존중하며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회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바지한다.
- ④ 목적에 맞게 부서를 구성하고 사무를 관장한다.
- ⑤ 부서장의 임기는 학기 단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42조 「임원 선출 및 자격」**

- ① 학생회장과 부회장은 민주적 절차와 방법(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따라 선출

되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는다.

② 학생회장과 부회장은 기타법령에서 청소년이나 아동에게 권장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 가.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나. 리더십이 있는 자

③ 학생회장과 부회장은 2인으로 구성된 한 팀으로 출마하며 본교 학생 5인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43조 「선출 시기」**

- ① 학생회장단 선거는 2학기 초에 실시하며, 학급회장은 매 학기 초에 실시한다.
- ② 부서장은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추천하고 학교장의 승인으로 임명한다.
- ③ 당해 학기말 또는 매 학기 초에 실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해제되는 최단 시일 내에 실시한다.

**제44조 「임기」** 본 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 교내봉사 2일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학생회 자치 결정에 따라 해임 여부를 결정하며,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 그 잔여기간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제45조 「선거 비용」** 선거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학교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46조 「선거관리위원회」**

- 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현 학생회장과 부회장으로 하고, 회원은 학급의 회장 및 부회장으로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각 호와 같다.
  - 가. 입후보자 소견발표회 준비
  - 나. 불법선거운동 감시
  - 다.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 라. 선거 및 입후보자에 관한 공지 사무
  - 마. 당선자의 선출결정 및 공고
  - 바.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

**제47조 「입후보자 제한」** 선거일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후보할 수 없다.

- 가. 교칙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현재 출석정지 이상의 처벌 중에 있는 학생
- 나. 교칙위반으로 출석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고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학생

**제48조 「입후보자 등록」**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 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다음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① 후보 등록서
- ② 선거권자 5명의 추천서
- ③ 선거운동 도우미 신고서

**제49조 「선거운동」**

- ① 위원회는 입후보자의 합동 소견 발표회를 준비한다.
- ② 선거운동은 입후보 등록을 필한 후부터 할 수 있다.
- ③ 선거가 끝난 후 입후보자는 선거 선전물 및 부착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0조 「선거일」** 선거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최소 3일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51조 「투표 및 개표」**

- ① 민주적 절차와 방법(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따라 선출한다.
- ② 선거인은 선거위원단이 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기표하여야 하며, 기표용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사인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 ③ 선거인은 기표용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기표하여 지정된 투표함에 넣는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 할 수 있다.

**제52조 「당선인」**

- ① 위원회는 최고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② 개표시 투표용지와 개표용지의 숫자가 불일치할 경우 선거위원단의 심의 결정에 따르며 오차가 1% 이상일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53조 「당선의 무효」** 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피선거권 박탈 또는 당선 무효를 결정한다.

- ① 추천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자
- ② 위원, 입후보자 및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 ③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한 자

**제54조 「대의원회」 학생회 심의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 ① 구성
  - 가. 학생회 회장, 부회장, 각 부 부장과 차장,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나.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 ② 기능
  - 가.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심의
  - 나. 집행위원회에서 부의 한 안건의 처리
  - 다. 사업 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 라.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및 심의
  - 마. 각 학급 건의사항 종합 및 토의
  - 바. 기타 필요한 사항
- ③ 회의
  - 가.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실시한다.
  - 나. 정기회는 매월 4째 주 목요일 회장이 소집한다.
  - 다.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개최할 수 있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재적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 학생회지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 라.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마.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안건을 작성하여 적어도 회의 1주일 전에 학생회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5조 「재정」**

- ① 예산: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결산: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회계연도: 학생회의 회계연도 만료일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 및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6조 「심의」 학생회의 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생활지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② 조직 및 편성에 관한 사항
- ③ 예산 편성,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5 장 학급회 운영규정**

**제57조 「기준」** 학급에서는 회장 1명, 남·여 부회장 각 1명을 다음 기준에 따라 선출한다.

**제58조 「피선거자격」**

- ① 품행이 단정하고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자
- ② 리더십이 있는 자

**제59조 「후보자 추천」**

- ① 학급 학생의 추천을 받은 자를 후보자로 한다.
- ② 출마 희망자는 자신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 ③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추천을 받았을 경우 출마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0조 「선거 및 당선」**

- ① 학급의 학생들이 보통/평등/직접/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 ② 회장 선거와 부회장 선거는 별도로 실시한다.
- ③ 회장 선거
  - 가. 학급 인원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나. 과반수 득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 득표 수 상위 2인끼리 재투표한다.
- ④ 부회장 선거
  - 가. 학급 인원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나. 과반수 득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 득표 수 상위 2인끼리 재투표한다.
  - 다. 동 득표수 획득 시 생일이 빠른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 ⑤ 학급회장 및 부회장이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었을 경우, 해당 학급별로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61조 「당선증 교부」**

- ① 정·부회장의 임기는 해당년도 한 학기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결원 또는 임기 중 교내봉사 2일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학급회 차치 결

정에 따라 해임 여부를 결정하며, 1주일 이내에 재선출 한다.

**제62조 「임무」**

- ① 회장은 그 학급을 대표한다.
- ② 학급 학생을 지휘, 통솔한다.
- ③ 학급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전한 학급 기풍을 확립한다.
- ④ 학급 구성원간의 친목과 단결의 도모하고 학급의 공동목표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⑤ 부회장은 학급회장을 도와주며 회장 부재시에 회장의 임무를 대신한다.

**제 6 장 규정의 개정**

**제63조 「개정 요구」**

다음 각 항의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개정할 수 있다.

- ①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
- ② 학생선도위원회 위원과반수 이상의 요구
- ③ 전체 교직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
- ④ 학생회의 요구
- ⑤ 학부모회의 요구

**제64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명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

**제65조 『개정 절차』**

- ① 본 규정에 대한 개정안 발의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회를 통해 학생의 의견을 받고,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을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수렴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작성한다.
- ② 개정안은 일정기간 공고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학생대표 참석)를 거치고 학교장의 결재를 통해 최종확정 된다.
- ③ 개정된 규정은 학교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일정기간 공고한다.

**제66조 『기타 사항』**

본 제·개정에 관한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내용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제67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중학교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함 (중학교에만 해당함)**

- ① 역할
  - 가.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의 결정에 관한 심의
  - 나.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 다.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을 심의
  - 라. 그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② 구성
  - 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나.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됨
  - 다. 위원회 외부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중에서 1인 이상 포함
- ③ 회의 개최
  - 가. 위원회는 ‘① 가-다’의 사항 심의하거나, ‘① 라’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0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의 장이 결정
  - 나.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 개최(회의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다.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나 면제 신청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
- ④ 회의 개최 및 의결
  - 가.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나.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⑤ 회의록 작성 등
  - 가.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 작성
  - 나.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승인 불가 사유

**<부 칙>**

- 1. 이 규정은 2006년 3월 2일 제정하였으며 학생·교사·학부모의 의견을 설문지나 홈페이지 또는 학생회 회의를 통해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로 효력을 발생한다.
- 2. 이 규정은 2006년 3월 21일 개정하여 22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3. 이 규정은 2006년 5월 18일 2차 개정하여 19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4. 이 규정은 2006년 9월 25일 3차 개정하여 26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5. 이 규정은 2007년 3월 6일 4차 개정하여 3월 7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6. 이 규정은 2007년 5월 31일 5차 개정하여 6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7. 이 규정은 2008년 3월 20일 6차 개정하여 4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8. 이 규정은 2009년 3월 10일 7차 개정하여 3월 1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9. 이 규정은 2009년 9월 7일 8차 개정하여 9월 8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10. 이 규정은 2010년 4월 5일 9차 개정하여 4월 12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11. 이 규정은 2011년 1월 5일 10차 개정하여 3월 2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12. 이 규정은 2011년 5월 25일 11차 개정하여 5월 30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13. 이 규정은 2012년 5월 11일 12차 개정하여 5월 14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14.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1일 13차 개정하여 11월 13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15.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9일 14차 개정하여 12월 22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16. 구 제32조 ~ 제43조는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규정으로 이전하고, 이 규정은 2015년 7월 29일 15차 개정하여 8월 3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17. 이 규정은 2015년 9월 4일 16차 개정하여 9월 7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18. 이 규정은 제 23조 3항 『체벌금지조항』을 추가하고, 2015년 11월 24일 개정하여, 11월 30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19.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 18차 개정하여 7월 4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0. 이 규정은 2017년 4월 17일 19차 개정하여 4월 18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1. 이 규정은 2018년 8월 17일 20차 개정하여 8월 20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2.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6일 21차 개정하여 12월 17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